

## 2025년 아산시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
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 등 성장잠재력을 갖춘 청년창업가를 발굴·육성하고 창업 기본 교육, 분야별 멘토링을 바탕으로 창업 기업의 생존율·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지역 정착 유도·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「2025년 아산시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」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5년 6월 18일

충남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장

###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 (출처: 중소벤처기업부)

#### ◆ 정의 : '지역의 자연·문화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가치를 창출하는 기업'

-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'지역가치 창업가'로 7대 유형의 비즈니스모델로 분류

7대 유형	① 지역가치	② 로컬푸드	③ 지역기반제조	④ 지역특화관광
	⑤ 거점브랜드	⑥ 디지털문화체험	⑦ 자연친화활동	

\* 세부내역은 [참고1] 로컬크리에이터 7대 분야 참조

#### ①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자

- 지역의 유·무형 자원 (역사전통, 문화예술, 자연생태, 생활문화, 지역특산물 등)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

#### ②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는 자

-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을 수립하는 자

#### ③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자

-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 내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는 속성을 지닌 만큼, 지역 내 고용창출, 관광객 유치 등 다방면의 활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자

# 1

## 사업개요

- **사업목적** : ①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수한 **청년 로컬크리에이터**(소상공인 청년 포함)를 발굴하여 경쟁력 있는 상품개발, 마케팅, 판로개척 등 **사업화 및 시장진입을 지원** ②**창의성이 높고, 청년만의 감성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특화 프로그램 운영과 액셀러레이팅(accelerating)으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**
- **사업내용** : ①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화된 로컬 상품/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**사업화 지원** ②**창업교육, 액셀러레이팅(accelerating)으로 창업아이템을 기획하고 고도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**

### □ 지원대상

로컬크리에이터	① 지역에서 <b>청년 창업가</b> (소상공인, 청년농부 등 포함)
	② 지역 자원을 활용해 비즈니스를 창출할 <b>예비 청년 창업가</b>

- **지원내용** : 창업지원비 **최대 1천만원\*** 이내  
\* 지원금액은 선정규모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정  
\*\* 세부내용은 본 공고문의 "3. 지원내용" 참조
- **선정규모** : 로컬크리에이터(10팀), 총 15명\* 이내  
\* 참여인원은 모집상황에 따라 변경하여 운영
- **사업기간** : 협약일로부터 '25년 12월 31일까지\*  
\* 지원 및 추진일정에 따라 사업기간 변동 가능

## 2

##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

### □ 지원대상(공통)

#### ①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사업장 주소

a) 아산시 소재 사업장을 둔 7년 이내의 청년창업가\* 또는 예비창업가\*\*

b) 아산시에 주민등록상 거주지\*\*\*를 두고, 지역에서 창업을 하려는 자

a) 또는 b)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\*\*\*\*

\*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지원제외 업종[별표1]에 해당되지 않는 창업가

\*\* 청년의 범위 : 25.1.1. 기준 18세 이상 ~ 39세 이하

\*\*\* 타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지만, 대학, 직장, 연고지(부모/친척)등 아산시에서 생활을 하는 청년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인정할 수 있음.

\*\*\*\*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은 사업지원 후 1년 이내(26.12.31.)까지 창업이 가능해야 함. 단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별도의 심의를 통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.

#### ② 지역자원을 활용해 비즈니스를 창출할 로컬크리에이터

- 청년만의 감성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자 하는 청년 또는 청년팀

### ※ 우대사항

- 지역소멸, 지역사회문제, 청년일자리, 원도심 활성화, 지역경제활성화 등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사회·경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 분야
- 바이오(BIO), 인공지능(AI)분야 등 기술을 활용한 창업분야
- 지자체 또는 정부 공모사업 등과 연계된 사업으로 추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
- 지역 고유의 특색이 강하고, 상품/서비스 개발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업 아이템
- 기타 지원 제외 대상 업종이 아닌 지역자원과 연계된 창의성이 높은 우수한 창업 아이템 분야

### □ 지원자격 및 제외 업종

#### 신청 제외 대상

☞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

\* 단,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자(체납처분유예승인),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,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

☞ 보조금 횡령 등으로 지원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자

\* 참여 제한의 기간 종료일로 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않는 자

### ☞ 정부(중앙, 지방), 공공기관의 지원사업에 다른 아이টে으로 수혜를 받는 자

\* 협약일 기준으로 창업패키지 지원사업(예비, 초기, 도약, 창업사관학교)\* 등에 선정되어 (협약체결) 본 사업과 연계성이 없는 사업아이템\*\*으로 정부지원사업을 활용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타 사업에 참여 중인 자, 단 협약기간이 종료(30일까지)가 예정된 경우는 예외 할 수 있음.

\* 창업 지원사업이란 :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,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,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

\*\* 연계성 없는 사업의 판단 여부는 선발 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름

※ 소상공인 육성사업으로 아산시가 참여하고 있는 신사업사관학교는 중복지원 가능

※ 단, 정부 및 지자체 등 지원기관에서 다수의 지원사업에 참여해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와, 사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음

※ 본 사업의 지원금액이 소액인 점을 고려하여, 타 지원사업에 수혜를 받더라도 중복(추가) 지원을 통해 지역 청년창업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
### ☞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

\* [별표1]의 지원 제외 업종의 분류코드 및 기타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

\* 단, 제출된 창업아이템이 지원 제외 업종과 무관할 경우, 신규 또는 업종 변경을 조건으로 별도의 심의를 통해 선발할 수 있음

### ☞ 기타 사업 주관기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

## □ 지원조건

○ 선정자는 지원기간 동안 주민등록(아산시) 또는 사업(사업자등록)을 유지해야 하며 사업변동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의 판단(심의)에 따라 계속 지원 여부 결정.

- 지원자는 사업기간 동안 주관기관이 시행하는 필수교육 및 주요 프로그램 등에 반드시 참여해야 함. (참여율이 낮거나, 불성실 한 경우는 지원을 축소하거나 지원중단 및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)

### 3

## 지원내용

- **지원내용** : 로컬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인 비즈니스 사업화 지원 (1,000만원 이내)과 창업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

### 가. 사업화 지원

구분	세부내용	
로컬크리에이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역 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 <b>사업화 지원</b> (상품/서비스 개발) 등</li> <li><b>마케팅비</b>(클라우드 펀딩, 전시회 참가, SNS 홍보)</li> <li>기타 로컬크리에이터 <b>활동 지원</b> (사업기획, 지역정착, 창업공간구성, 네트워크 구성) 등</li> </ul>	4,000천원 (10팀)
소계		40,000천원
비고	※ 직접지원 창업 아이템의 평가와 필요에 따라 차등 지원을 원칙으로 함 (창업아이템 당 최대 10,000천원) 단, 초과 지원이 필요할 경우는 별도의 심의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음	

※ 사업화 지원은 예산을 고려하여 취소, 변경 될 수 있음

### 나. 창업성장지원(공통)

지원항목	주요 프로그램
창업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창업역량 강화 교육(법률, 세무, 노무, 금융 등)</li> <li>로컬브랜드의 이해와 글로벌 이슈와 트렌드 등</li> </ul>
액셀러레이팅 (accelerating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창업 성장을 위한 글로컬(Glocal) 스케일-업(scal-up)프로그램</li> <li>지역 상권 특화를 위한 <b>로컬비즈니스 스쿨</b>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역 자원을 활용한 로컬브랜딩(상품기획과 개발)</li> <li>로컬브랜딩 성공사례 탐방(인사이트 투어) - 2회 이내</li> </ul> </li> <li>클라우드 펀딩(crowd funding) 런칭(launching) - <b>와디즈 연계</b></li> <li>온라인 홍보마케팅 전문교육 및 콘텐츠 제작 교육</li> <li>로컬크리에이터 개발 상품(서비스) 클라우드 펀딩</li> </ul>
창업멘토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로컬브랜딩을 위한 개별 맞춤형 전문가 멘토링 - 5개팀 이내</li> <li>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연계 - (선정자 선택)</li> </ul>
자금지원(연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청년창업가 충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지원 안내 (최대 50백만원)</li> </ul>
네트워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업참여자 및 지역의 청년들이 서로 교류하고 상호 공유와 협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네트워킹을 지원 - 3회 이상</li> <li>발굴된 로컬크리에이터가 <b>크루(crew)</b>로 활동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 지원</li> </ul>

※ 프로그램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소, 변경 될 수 있음

- **지원방법** : 분야별 사업참여자를 모집하고(15명 이내), 액셀러레이팅(로컬비즈니스 스쿨 등)을 통해 고도화된 사업 아이템을 선정하여 차등 지원(창업아이템 당 최대 10,000천원 이내)

**지원금 지급 관련 주요 사항**

- 선정 후 자금사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원금을 지급.
- 지원금은 분할 또는 일괄 지급할 수 있으며, 대금지급은 선지급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에 따라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해 청구하면 후지급으로도 지출 할 수 있음.
- 지원자는 상품/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,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정산.
- 지원금은 물품구입, 용역 등에 사용되는 부가가치세는 허용되지 않으며, 국세/지방세 등 세금 납부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, 인건비 지급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음.
- 선정자는 사업비 수령을 위한 별도의 통장 계좌를 개설하고 사업기간 동안 별도로 관리해야 함을 원칙으로 함. \*단, 지원금의 규모 및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이미 사용 중인 지원자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음.

□ **지원제외**

- ✓ [참고 2]의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거나 창업하려는 자
- ✓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
- ✓ 보조금 횡령 등으로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
- ✓ 기타 아산시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

## 4

## 신청 및 접수

□ **공고일** : 2025년 6월 18일(수) ~ 7월 4일(금), 18:00 까지

- **신청기간** : 2025년 6월 18일(수) ~ 7월 4일(금), 18:00 까지 제출 완료 필수(18:00시 이후 제출 건은 탈락)

□ **신청방법** : [clocalasan@gmail.com](mailto:clocalasan@gmail.com)

□ **제출서류** : 신청서 등 [서식] 양식에 따라 작성 후, hwp파일로 업로드

구분	제출서류명	비고
필수	1 [서식1] 참가신청서	[서식] 작성 후 첨부
	2 [서식2] 사업계획서	
	3 [서식3] 서약서	
	4 [서식4]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	
	5 주민등록등본	
	6 신분증사본	
	7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	
해당 시	8 (개인) 사업자등록증 또는 (법인) 법인등기부등본	대표기업: 마이데이터 동의 시 자동제출 팀원기업: 별도 발급 후 첨부
	9 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(개인, 법인 각각)	
	10 소상공인확인서(팀원 조건 해당 시) * 중소벤처기업부 발급 '중소기업확인서(소상공인)'	별도 발급 후 첨부

## ◆ 유의사항

- 1)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혹은 유효기간이 모집마감일 이후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
- 2)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동 공고 내 **게시된 양식을 사용**하여야 하며, 임의 양식의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
- 3) 사업계획서는 인당 1부 제출이며, **개인사업자·법인사업자에 해당하는 제출서류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은 해당 기업 모두가 제출**해야 함

## 5

## 평가 및 선정

□ **평가 절차** : 총 2단계 평가(서류 → 발표평가)를 통해 최종선정

① 서류 평가	② 발표평가	③ 최종선정
선정 규모 (6개팀 내외)의 2~3배수 내외를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발	20분 발표, 10분 이상 질의응답	'발표평가(100점)'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(단, 60점 미만 제외)

\* 신청자격 요건검토는 상시 진행하며, 미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예정

□ **평가 방법**

○ **서류평가** :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항목 평가(가점 반영)를 통해 **발표평가 대상자** (선정규모의 2~3배수 내외) 선정

- 평가항목별 점수가 배점의 60% 미달되는 점수를 취득한 자는 종합 평가 점수와 관계없이 선정대상에서 제외

< 서류평가 평가지표(예시) >

구 분	평가항목	세부내용	배점
신청자(팀) 역량	사업 이해도(15)	• 아이템/사업에 대한 경험(경력) 및 제안 동기, 지원 필요성 • 지역 이해도 및 상권 현황특성 이해도	15
	성장성 (20)	• 신청자(팀)의 아이템 실행을 위한 전문성 및 보유 역량 • (팀 신청 시) 팀원 간 역할분담 및 협력 계획의 적절성	20
사업수행 계획	지역연계 및 창의성 (20)	• 제안 아이템/서비스가 아산시 지역자원(유무형)을 활용하는 방식의 독창성 • 기존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아이디어의 참신성 및 매력도	10 10
	사업화 계획 및 실현성 (20)	• 아이템 개발 및 사업화 추진 일정, 단계별 실행 계획의 명확성 • 목표 고객 설정 및 홍보·마케팅 전략의 현실성과 적절성	10 10
지역사회 기여 및 지속가능성	지역 기여 및 파급력 (15)	• 사업을 통해 예상되는 아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(일 자리 창출, 방문객 유치 등) • 지역 내 다른 소상공인 또는 공동체와의 연계협력 방안 및 상생 노력	10 5
	사업비 운영 계획 (5)	• 지원금 예산 편성의 타당성 및 집행 계획의 구체성 (지원금 규모 고려)	5
	자립운영 및 성장전략 (5)	• 지원사업 종료 후 아이템/사업의 지속적인 운영 방안 및 자립 의지 • 사업의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 및 확장 계획	5

\* 평가지표, 평가절차 등은 평가계획 수립 시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음

- 발표평가 :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지역성 및 성장 가능성(사업성 등)에 대해 발표 평가로 최종 선정

\* 발표평가(PT 양식, 지표 등)에 대한 내용은 서류평가 통과자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, 사업계획 등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, 최종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

□ 최종선정

- 서류평가 결과는 최종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며, 최종선정은 발표평가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여 지원금 배정

※ 차등 지원으로 실제 지원금액은 창업아이템 당 최대 1천만원으로 총 지원 아이템수는 증감 할 수 있음. 단, 예산의 여유가 있고, 특별한 경우는 별도 심의를 통해 초과 지원할 수 있음.

※ 선정평가 결과 신청자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규모 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

□ 사업 운영일정

※ 추진일정은 대내·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



\* 사업 운영일정은 향후 모집·선정 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

## □ 신청 시 유의사항

-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,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, 도용,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
-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·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, 사업선정 취소 및 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 조치가 취해짐
- 동 사업 신청은 창업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, 동 사업 신청자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으면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 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신청 마감 시간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하여 평가
-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의 신청 자격 및 사업 계획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위배 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협약 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 취소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
- 사업기간 중 대표자가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 사업선정취소, 협약 해약, 제재 및 환수조치 될 수 있음

# 참고1

## 로컬크리에이터 7대 분야 (출처: 중소벤처기업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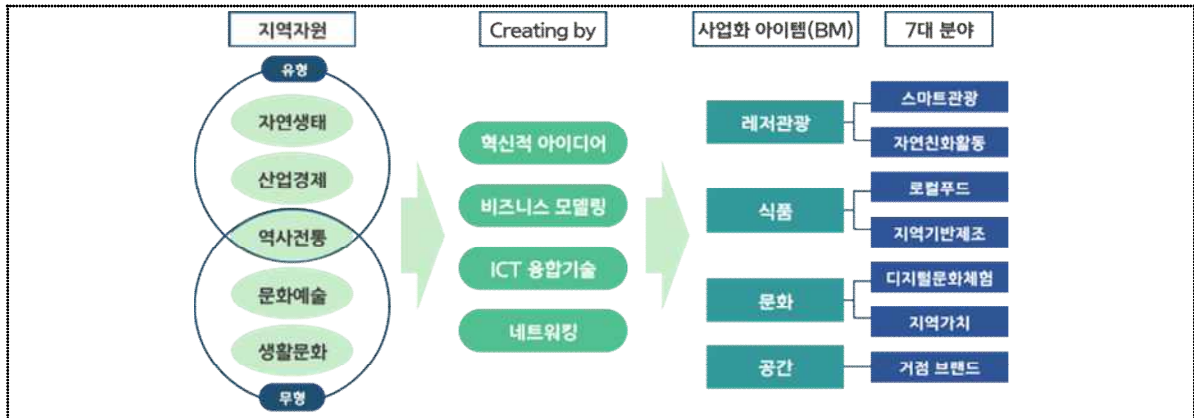
### < 로컬크리에이터 개념 >

[정의] '지역의 자연환경, 문화적 자산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'

-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창업가로 7대 유형의 비즈니스모델로 분류

※ ① 지역가치, ② 로컬푸드, ③ 지역기반제조, ④ 지역특화관광, ⑤ 거점브랜드, ⑥ 디지털문화체험, ⑦ 자연친화활동

< 로컬크리에이터 유형 분류표 >



### [요건]

- ① 지역의 유·무형자원(역사전통, 문화예술, 자연생태, 생활문화, 지역특산물 등)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자
- ②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 수립을 통해 창업하는 자
- ③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여 나타난 성과를 지역에 환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자

### < 로컬크리에이터의 7대 분야 >

구분	내용
지역가치	· 지역의 문화나 고유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융합하여 새로운 경제적·문화적 가치를 창출 · (기대효과) 플랫폼과 더불어 콘텐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므로, 지역을 콘텐츠화하여 다양한 비대면 비즈니스모델 창출이 가능
로컬푸드	· 지역의 특산물, 미활용 작물 등 농수산물을 활용한 식품가공 및 유통 · (기대효과) 위성적인 환경에서 재배되는 스마트팜이나, 농수산 산지와 연결된 구독경제, 종자개발부터 유통·제조·판매 등이 다양하게 결합된 6차산업 발전
지역기반제조	·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재를 활용하거나 지역특색을 반영한 제조업 · (기대효과) 수공업과 DIY 활동 증가가 예상되며, 이를 로컬제조업으로 육성
지역특화관광	· 관광자원(자연환경, 여행지 등)을 활용하여 해당지역으로 관광객 유입 확대 · 지역 방문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및 자연생태계의 지속가능성 · (기대효과) VR 등을 활용한 가상 관광, 체험 등의 관광 수요증가 예상
거점브랜드	· 지역 내 복합문화공간 등 지역거점 역할 · 지역성과 희소성을 기반으로 지역의 가치를 재창출 · (기대효과) 쇼핑은 온라인 쇼핑으로 대체, 오프라인 소비는 단순소비보다는 가치소비(Meaning Out)가 중요해져 지역별 거점브랜드 육성이 필요
디지털 문화체험	· 지역별로 역사와 문화가 담긴 유적지와 문화재 등을 과학 기술 및 ICT를 활용하여 재해석 또는 체험 · (기대효과) AR, VR 등과 결합된 디지털 문화체험 콘텐츠 시장 확대 예상
자연친화활동	· 지역별로 상이한 자연환경(바다, 산, 강 등)에서 진행되는 서핑, 캠핑 등 아웃도어 활동을 위한 다양한 사업모델 · (기대효과) 집단적 활동(테마파크 등)보다는 가족 또는 나홀로 단위의 레저활동(캠핑, 글램핑 등)의 수요증가 예상

## 참고2

## 지원 제외 업종

표준산업분류	업종
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107 중	예술품,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
46209 중	잎담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46416, 46417 중	모피제품 도매업 * 단,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
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11 중	약국, 한약국
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
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
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
56211	일반유희주점업
56212	무도유희주점업
58122 중	경마, 경륜,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
58211, 58212, 58219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68	부동산업 * 부동산의 임대, 구매,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,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·분양, 임대 활동이 포함 * '착한 임대인'에 한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(68112) 신청 가능 ('20.12.~'23.12.) (4page 참고) * 단, 부동산관리업(6821),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<b>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(68221)</b> 은 신청가능 - 부동산관리업: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(주거용·비주거용 부동산관리) - <b>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</b> :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,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

표준산업분류	업종
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
731	수의업
73904 중	감정평가업
75330	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(예: 탐정업, 흥신소 등)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86	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 * 안마원(96122)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(통계청 기준)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91121	골프장 운영업
9122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91221 중	성인용 게임장 운영업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-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-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기타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아산시 또는 사업 위탁기관에서 지정한 업종

### 참고3

### 가점 증빙서류 안내

구분	연계사업	가점	증빙자료
중소벤처기업부	지역발전특구	2점	- (자격) [별첨3] 지역발전특구 내 사업장 소재지가 위치해 있으며, 해당 지역 특화 아이템을 활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- (증빙) 별도 없음
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	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 입점지원	2점	- (자격) 최근 3년간 해당 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('22-24년) - (증빙)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을 통해 별도 확인 예정
행정안전부	청년마을 만들기 사업	1점	- (관련지역) 해당 사업에 선정된 39개 지자체('18~'24년) * '25년 신규 청년마을 선정지 포함도 가능(4월 중 최종 선정) - (자격) 해당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추진한 청년단체·기업의 대표 혹은 운영진(1년 이상 활동) 중에서 행정안전부의 확인을 받은 자(사람, 업체 포함) - (증빙) 청년마을명, 운영기간, 운영내용 및 역할 등이 포함된 확인서
	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	1점	- (관련지역) 해당 사업에 선정된 20개 지자체('23~'24년) - (자격) 해당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(사람, 업체 포함) - (증빙) 로컬브랜딩 관련 사업명, 참여 기간, 참여내용 및 역할, 참여자 및 기업명 등이 포함되고 해당 지자체장 직인이 있는 추천서
	인구감소지역 내 소상공인	1점	- (자격) [별첨4]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에 사업장 소재지가 위치해 있는 소상공인 - (증빙) 별도 없음
문화체육관광부	문화도시 지원사업	1점	- (관련지역)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문화도시(24곳) 및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지자체(13곳) - (자격) 문화도시 및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지자체에서 문화도시 사업에 1건 이상 또는 1년 이상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해당 지자체장 및 문화도시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(사람, 업체 포함) - (증빙) 문화도시 관련 사업명, 참여 기간, 참여내용 및 역할, 참여자 및 기업명 등을 반드시 포함하되, 해당 지자체장 및 문화도시센터장의 직인이 있는 추천서 문서
농림축산식품부	농림축산식품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사업	1점	- (자격) 해당 사업으로 준공('19~'24년)한 시설에서 해당 지자체와 협약 등을 통해 사업을 운영중인 운영주체(단, 중소기업부에 정한 업종 등 조건 필수) - (증빙)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자체를 통해 확인한 공문
특허청	소상공인 IP 역량강화사업	1점	- (자격) 해당 사업 중 지식재산센터의 'IP창출 종합패키지' 수혜한 기업 - (증빙) 수혜사실 확인서류(공문)